신안산대학교	외국인 유학생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	규 정 번 호	3-1-17
		제 정 일 자	2021.08.20
		개 정 일 자	2024.4.15.
		책임부서/팀·계	국제교류협력원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.)에 유학하는 외국인학생에 대한 교육 및 대학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외국인학생(이하 “유학생”이라 한다.)이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우리 대학에 입학을 허가받은 자와 우리 대학과의 교류협정이나 학생교환에 관한 협정을 맺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우리 대학에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전문학사·학사과정) ① 우리 대학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. 다만, 유학생의 졸업요건은 학칙 및 내규 이외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미취득 입학자의 한국어연수 기준은 교육부 “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” 등 관련 지침을 따른다.

제4조(한국어연수) ①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미 취득유학생은 우리 대학이 주관하는 한국어연수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교환학생 및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유학생의 경우에도 별도의 한국어연수를 할 수 있다.

③ 정규 교양 교육과정에 편성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유학생에게는 한국어연수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.

④ 국제교류협력원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·관리 실태조사(이하“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”라 한다.)의 학위과정 평가영역 중 ‘유학생 공인어학능력(신입, 재학)’ 지표를 위한 한국어연수 강의료 및 제반사항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2024.4.15. 신설>

제5조(장학제도) 유학생의 장학제도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 장학금지급 규정에 따른다.

제6조(기숙사생활) 유학생의 기숙사 생활수칙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 기숙사 운영규정 및 기숙사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7조(학생지도) ①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학생의 지도를 위하여 유학생 담당교직원을 둔다.

② 유학생 담당 교직원은 그 결과를 상담 일지에 기록하여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류로 남겨야 한다.

제8조(비용)<2024.4.15.신설>① 국제교류협력원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에 관련한 각종 제반 사항(강의료,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 따른 학생지원비 등)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2024.4.15. 신설)

②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에 관련한 비용에 대한 지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2024.4.15. 신설)

제9조(기타)<2024.4.15. 조항변경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의 학칙 및 학사 내규에 따르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부터 시행한다.